인증 마크 & 인증서 사용 및 홍보방법

1. 당원마크 및 인증표시 사용방법

- 1) 인정표시(KAB 마크)는 단독으로 사용불가하며, 반드시 당원의 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함
- 2) 인정표시(KAB 마크)를 당원의 마크와 함께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원의 마크를 좌측 또는 상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해야 함.

2. 인증표시,로고 사용 및 홍보 기준

- 1) 인증 받은 조직은 문서, 송장, 광고 및 홍보물 등에 당원의 로고, 명칭, 인증규격,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음.
- 2) 인증조직은 제품 및 단위포장에 당원 마크, 인정표시(KAB 마크), 명칭, 인증규격,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인증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됨

3. 공정거래 지침 준수

인증의 표시,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"표시,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력" 제 3조에 규정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해야 함

4. 인증서의 사용

- 1) 상거래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인증서를 교부받은 조직은 인증서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음다만 복사본일 경우에는 복사본임을 보증한 이서(선언문, 책임자 서명, 날인, 발행일)를 행해야 함.
- 2) 당원에 의해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피, 인증조직은 지체없이 인증서 원본을 반납해야함.

5. 인증서 사용기간

인증조직은 인증유효기간 내에서만 당원의 마크 및 인증표시,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(인증정지기간 내에 인증서 사용 및 홍보 불가)

위반에 대한 조치

인증표시, 마크에 대한 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
- 1) 당원은 해당조직에 문서로서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시정초지, 인증의 일시정지, 인증취소, 인증서 회수, 정정광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 - 이와 같은 조치는 ESGP-230(인증의정지및취소절차서)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
- 2)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 및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인정기관(한국인정지원센터 / KAB)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
MLB 가입사실 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

1)국문 약칭 표기 (좌우대칭)

QMS에 대한 IAF 가입 인정기관에 인정기관 의한 의한 인정

1)국문 정식 표기 (좌우대칭)

품질경영시스템에대한 국 제안정기관협력기구의 국 제 다자간상호인정협정 가 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

인정기관 표시(마크)



- IAF 마크는 IAP 다자간상호인정협정마크 또는 IAP MLA 마크로 ISO9001& ISO14001 인증서에 표시 (LAP MLA 마크사용시 KAB 마크와 함께 사용
- 당원은 한국인정원과의 LAP MLA 마크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합니다.